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0. 28.  
행 정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0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0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2002년 10월 21일 제9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제정이유

- 주5일 근무시대 도래에 대비 구민의 체위증진은 물론 예상되는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생활체육교실운영, 문화체육행사개최 및 국내외 교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목적 ..... (안 제1조)  
구민의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을 진흥시킴으로써 체위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
-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의 진흥 ..... (안 제3조,4조,5조)
  -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 설치 운영
  - 문화예술·생활체육의 공연, 발표, 전시, 교류
  - 문화예술·생활체육관련행사 및 관련 동호인·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등
- 교실강좌운영 ..... (안 제5조~제12조)
  - 강좌과목 :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 선정
  - 교실위탁운영
  -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별도 시행규칙으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홍수)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동안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각종 교실 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 기준이나 근거 등이 없이 무료 운영해 오던 사항을 이에 대한 용어의 구분과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의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을 진흥시킴으로써 체위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의 진흥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안 제4조) 교육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별표로 열거하고 과목추가는 구청장방침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

교실이용자에게 장소 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월 4만원 이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 또한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조례 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운영기준 등이 없이 무료 운영해 오던 것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일정의 이용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부담원칙에 부합될 수 있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하고 체위를 증진함으로써 구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과목 추가선정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입법예고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02. 8.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 이유

- 주5일 근무시대 도래에 대비 구민의 체위증진은 물론 예상되는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생활체육교실운영, 문화체육행사개최 및 국내외 교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목적(안 제1조)  
구민의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을 진흥시킴으로써 체위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
- 2)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의 진흥(안 제3조, 4조, 5조)
  -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 설치운영
  - 문화예술·생활체육의 공연, 발표, 전시, 교류
  - 문화예술·생활체육관련행사 및 관련 동호인·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등
- 3) 교실운영(안 제5조~제12조)
  - 강좌과목 :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교실위탁운영
  -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별도 시행규칙으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의2

(2)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2조, 제3조

(3)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4조

나. 협의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 : 조례(안) 별첨

마. 입법예고 : 2002. 6. 20 ~ 7. 9(20일간)/특이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이라 함은 구민의 체위증진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교육·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2. “레크리에이션”이라 함은 심신의 단련과 활력의 재충전을 위한 오락 또는 제1호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오락형태의 운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라 함은 자아능력개발과 보다 다양하고 격조있는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창작·표현(공연 등)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교양기술”이라 함은 사회활동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교양 등을 말한다.
5. “건전여가교실”이라 함은 위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목(종목)을 교육·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진흥) ①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기타 구민 문화예술·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치역사회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①제3조②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4. 학교체육 육성·지원
5. 문화예술관련행사(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6. 지자체 또는 국제간 체육·문화예술 교류
7. 교실(위탁교실 포함)의 설치·운영
8.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②위 ①항 각호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실기능) 교실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
2. 여가선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교양기술교육
3. 교육과목의 발표(또는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4. 제1호, 제2호, 제3호 기능에 대한 상담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6조(교육과목 등) ①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한 교육, 공연, 발표, 전시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대상과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 대상과목의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교실별 교육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위촉) ①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①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이용자에게 장소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는 월 최고 40,000만원 이내로 하고 금액, 징수수납 등의 수강료 관련 세부규정은 구청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제10조(교실위탁운영) ①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④위탁운영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11조(위탁교실의 지원) 구청장이 교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